

비지원 아동양육비 집행 정보

Nonassistance Support Enforcement Information

(제 26.18, 26.23, 34.05, 74.20조 및 RCW 74.20A)

이 양식을 보관하십시오. 이 양식에는 귀하의 아동양육비 사례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명령서 관계 당사자(들)

양육비 관련 양당사자는 비양육권자 부/모, 양육권자 부/모 또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합니다. 비양육권자 부/모는 아동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가르키며, 양육권자 부/모 또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란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육권자 부/모나 비양육권자 부/모 모두는 아이들의 건강보험 및/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료지원에는 비상한 의료비 중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과 명령서에 요구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는 의료보험료 부담금(현금 지불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동지원부서

아동지원부(DCS)는 주 전역에 있는 양육비 업무를 처리 담당하는 사무실입니다. DCS는 아동양육비 사례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DCS는 어느 한 쪽 부/모가 양육비 집행 서비스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아동양육비 징수 서비스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DCS에 양육비 징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지만 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워싱턴주 Washington State Support Registry(다음 항목 참조)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DCS에서 귀하의 양육비 지급 서비스(PSO: Payment Services Only) 사례를 개시하게 됩니다. PSO 사례일 경우 DCS는 단지 양육비 지급 서비스와 등록 절차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Washington State Support Registry(워싱턴주 아동양육비 등록소, WSSR)

WSSR은 DCS 소속기관이며, 해당 양육비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CS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WSSR에 귀하의 아동양육비 명령서를 기록합니다.

1. 아동양육비와 관련이 있는 어느 한 쪽 부/모가 DCS에 양육비 징수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2. 비양육권자 부/모가 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양육비를 WSSR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경우

귀하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

DCS에 양육비 집행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1. 비양육권 부/모로부터 직접 받은 돈을 전부 DCS로 송부할 것. DCS는 귀하의 사례건에 대해 지급된 모든 금액을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DCS에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양육비를 받았을 경우 DCS에 그들 양육비 목록에 대해 진술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비양육권 부/모로부터 직접 받은 양육비를 DCS에 보내면 DCS에서 귀하의 DCS 현금인출카드(DCS debit card)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시킵니다.
2.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DCS에 통보할 것. DCS는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만 양육비를 제대로 송금하고 사례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DCS는 1종 우편으로 통지서를 우송할 수 있습니다.
3. 비양육권 부/모와 재결합을 하였거나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 경우 즉시 DCS에 알릴 것. DCS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4. 양육비 징수를 위해 변호인이나 대리기관을 수입할 경우 DCS에 알릴 것. 변호인이나 대리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비롯하여, 그들이 수행할 일을 DCS에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 a. 변호인이나 대리 기관이 양육비를 징수하는 동안 DCS에서 양육권 부/모를 위해 해당 양육비를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b. 아동양육비 명령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변호인을 수입할 경우 변호인 또는 귀하는 비양육권 부/모와 DCS에 그에 관해 반드시 통보해야만 합니다.
5. 귀하의 사례에 등록된 모든 양육비 명령서 사본을 DCS에 제공하거나 DCS가 입수할 수 있도록 도울 것.

비지원 양육비 징수 서비스 신청 접수에 대한 요건

법적 양육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 징수 집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법적 보호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아이들을 양육 중이라는 것을 진술해야만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한 번도 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부족 TANF 또는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 DCS는 송금한 \$550의 양육비에 대해 회계연도마다 \$35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9월 30일에 끝납니다. DCS는 첫 \$550를 송금하고 나서 아동양육비 징수금에서 공제금 \$35를 보류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각각 달라 양육비 사례건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 연간 수수료를 그에 따라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정부로부터 TANF, 부족 TANF 또는 AFDC를 받을 경우 그 해당 주정부의 공공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선언서 또는 수혜 기록 증명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DCS에 송부해야만 합니다. DCS는 그 증빙서류가 접수될 때까지 해당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35의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에 요청하여 DCS에 예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집행 서비스

양육비 금액이 명령서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DCS는 그 금액을 징수하려고 시도하지만, 해당 명령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계산 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경우 해당 양육비 금액을 징수하기에 앞서 DCS에서 양육비 명령서와 관련이 있는 양쪽 부/모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명령서가 없거나 명령서가 있지만 양육비 금액이나 자녀 의료지원(금)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경우 DCS에서 양 부/모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1. DCS는 이 통지서에 필요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의료 지원(금)을 지정해 놓을 것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양 부/모의 소득과 해당되는 자녀 수에 따라 제정됩니다.
2. 양육비 명령서에 양육비 지불 의무가 있는 각 부/모가 자신의 고용주 또는 노조를 통해 기본 양육비 금액의 25% 이하의 금액으로 자녀를 의료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3. 명령서에는 또한 양육권 부/모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아 귀하 또는 주정부에서 지급한 보험료 부담 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양육비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DCS는 양 부/모에게 **Notice of Support Owed (양육비 지급의무 통지서)**서류를 발송합니다.

1. DCS는 이 통지서에 고정된 양육비 금액을 설정할 것입니다. 양 부/모는 DCS에서 설정한 양육비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DCS는 양육비 명령서 관계 부/모들과 함께 양육비 금액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양육비 금액이 제정되고 DCS에서 비양육권 부/모의 소재지를 알면, DCS는 그 직장(고용주)에 **Income Withholding for Support(아동양육비에 대한 소득 보류)** 통지서를 우송합니다. 해당 고용주는 이 서류에 따라 비양육권 부/모의 소득이나 급여에서 해당 양육비 금액을 보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DCS에서 비양육권자 부/모의 직장 소재지를 모를 경우 DCS는 해당 양육비 징수를 위해 비양육권자 부/모의 급여나 소득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양육비명령서에 자녀들의 의료지원(금)을 위한 규정이 들어 있을 경우 DCS에서 그 규정을 집행합니다. DCS에서 취하는 조치는 해당 명령서의 규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1. 양육비 명령서에 비양육권자 부/모가 아이의 의료보험 제공 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비보험 의료비용, 공제금 및 코페이 금액에서 자신의 몫을 지불하라고 명하거나 비양육권자 부/모에게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고 명할 경우 DCS에서 이를 강행함.
2. 양육비 명령서에 비양육권자 부/모가 아이들의 의료보험 제공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DCS는 양육비 명령서를 수정하기 위해 청원을 시도할 수 있음.
3.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귀하가 아이의 의료보험 제공 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비보험 의료비용, 공제금 및 코페이 금액에서 자신의 몫을 지불하라고 명하거나 귀하가 아이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대 부/모의 의료보험료 부담금을 지불하라고 명하는 경우, 비양육권자 부/모가 아동양육비 집행서비스를 신청하면 DCS에서 의료지원(금) 지불 의무를 강행함.

자녀들을 가입시킬 수 있는 의료보험이 있으면 DCS에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봉한 **양육권자 부/모의 의료보험정보서(Custodial Parent Health Insurance Information)**를 증빙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어 DCS로 하여금 양육비 명령서에서 명한 의료지원(금) 지불 의무를 강행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DCS에 유효한 의료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며, 서면으로 의료지원(금) 지불 의무를 강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DCS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

1.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또는 둘 다 **Paternity Acknowledgement(부성 인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주정부 또는 부족 법원에서 아이의 법적 아버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DCS는 소장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검찰총장 검사, 부족 법원 또는 검찰총장실에 의뢰합니다.
2. 아이의 부모 둘 다 **Paternity Acknowledgement(부성 인정서)**에 서명하여 제출했다면 DCS에서 법원조치 없이 양육비 명령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DCS에 양육비 명령서에 관련되는 상대 부/모가 양육비 징수 집행 총괄 서비스를 의뢰하기를 원하면 귀하가 이를 원치 않아도 DCS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명령서 관계 양 부/모가 워싱턴주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될 경우 DCS에서 양육비 징수 집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양쪽 부/모가 다른 주정부로부터 양육비 징수 집행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2. 비양육권측 부/모에게 워싱턴주에 어떤 연고가 있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연고란 비양육권측 부/모가 워싱턴주 사업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거나 워싱턴 주 내에 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권측 부/모에게 DCS에서 아동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고가 워싱턴주에 있어야만 합니다.

비양육권측 부/모가 다른 주에 살고 있고 워싱턴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워싱턴에서 살고 있을 경우 DCS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례를 사법 관할구에 맡겨 워싱턴주법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함.
2. 비양육권측 부/모가 사는 주정부에 연락하여 양육비를 징수함. 해당 주는 그 주의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DCS는 비양육권측 부/모와 함께 체납된 월별 아동양육비를 협정합니다. 이 금액은 양육비 명령서에 기재된 양육조건과 해당 사례에 대한 체납 아동양육비 총액에 근거해 제정합니다.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DCS에서 **Income Withholding for Support(아동양육비를 위한 소득 보류)** 통지서를 제기할 수 있을 경우 DCS는 비양육권 부/모의 고용주(알고 있을 경우)에게 본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Income Withholding for Support(아동양육비를 위한 소득 보류)** 통지서를 제기할 수 없을 경우 DCS는 비양육권측 부/모에게 **Notice of Support Debt and Demand for Payment(양육비 부채 및 지급 요망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Notice of Support Debt and Demand for Payment(양육비 부채 및 지급 요망 통지서)**에는 양육비 금액과 DCS에서 **Income Withholding for Support(아동양육비를 위한 소득 보류)** 통지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귀하가 법원의 명령아래 지정된 양육비 관리자(payee)일 경우 DCS는 양육비 금액이 나와 있는 통지서 사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통지서 사본을 받으신 후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양육권측 부/모는 협의회(비공식 심의회)를 요청하여 양육비 금액이 적힌 통지서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협의회(Conference Board)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심의회를 신청하고 비양육권측 부/모가 협의회를 신청한 경우 귀하에게 심의회 또는 협의회 중 하나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설정, 집행 또는 수정할 경우 DCS는 제 1종 우편으로 양측 부/모에게 통지서를 보내며, 양측 부/모가 알려진 최종 주소로 통지서를 우송합니다. DCS에서 보내는 통지서는 별도로 다른 통지서를 또 보내는 일 없이 최종 통지서로써의 효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행정법 판사(ALJ)는 수정 소송절차에 한 쪽 부/모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취급해 양육비 명령서 수정 청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DCS가 소송절차에 출두하지 않은 부/모에게 제 1종 우편으로 해당 부/모가 제공한 최종 주소지로 보낸 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DCS는 아동에 대한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설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변인

DCS와 함께 일하는 아동양육비 담당부서, 모든 검찰총장 사무실 및 검찰관실은 보건사회부(DSHS)를 대변합니다. 이들 사무실은 양육비 명령서 관련 아이의 어느 쪽 부/모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심의회

해당 양육비 명령서 관계 양 당사자들은 RCW 제34.05조 규정에 따라 본 명령서에 관련되는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개최되는 심의회는 양육비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회에 불참할 경우 행정법 판사(ALJ)는 불참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DCS 또는 상대방 부/모가 요청한 사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심의회에 법적 대리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경감

위싱턴주 법은 비양육권 부모가 6개월 이상 구치소, 교도소, 또는 교정 시설 수감형을 받아서 아동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아동 양육비를 일시 경감해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양육비 경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 경감은 귀하, 양육권 부모, 또는 DCS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경감이 귀하의 소송 건에 적용된다면, 귀하는 양육비 경감 조건과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각 사람의 심의회 요청 권리를 설명한 통지서를 DCS로부터 받게 됩니다.

양육비 징수 서비스

DCS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1. 현행 및 체납된(있을 경우) 양육비를 징수함.
 - 어떤 경우에 한해, DCS는 비양육권자 부/모로 하여금 양육비 명령서에 기재된 현 월양육비 금액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양육비 금액은 DCS에서 모든 현행 및 체납 양육비를 다 회수할 때까지 점차 증가됩니다.
2. 체납 양육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징수함. DCS는 양육비 명령서나 주정부 또는 부족 법정 판결문에 미납 양육비에 연체 이자를 허용하는 경우만 그렇게 합니다.
3.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taxa 비용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taxa 비용도 징수함.
4. 양육비 명령서에 배우자 수당(별거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이 또한 징수함. DCS는 배우자 수당 금액을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5. 의료지원(금) 요건을 집행함. DCS는 RCW 제74.20조 및 RCW 제74.20A조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사용하여 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한 비상한 의료비용(예: 코페이, 공제금, 보험료)을 징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보험 대상의 의료비용은 WAC 388-14A-1020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DCS는 의료보험 제공요건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아동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부담해야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기본 양육비의 25% 미만의 현금)에서 지불하도록 **국립의료지원통지서(National Medical Support Notice)**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6.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수료) 후 계속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 교육비도 징수함. 교육비는 주정부나 부족 법정 판결문에 교육비 지급을 의무화 해 놓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DCS는 이러한 형태의 양육비(교육비 금액)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조치 사항은 DCS에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DCS는 해당 사례 요건대로 조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DCS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DCS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모든 DCS와의 왕래 서신에 다음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사례 번호.
2. 비양육권자 부/모의 이름 및 사회보장 번호(알고 있을 경우).

DCS 서비스 중단

DCS의 양육비 총괄 징수 서비스(full collection services)를 중단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DCS에 요청해야 합니다. 비양육권자 부/모가 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양육비를 WSSR을 통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DCS는 양육비 총괄 징수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를 양육비 징수 업무 서비스(PSO)로 변경한 후 비양육권자 부/모에게 통지합니다. WSSR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면 DCS는 해당 사례를 그대로 종결합니다.

귀하나 자녀가 비양육권자 부/모와 재결합을 하는 경우 DCS는 현행 양육비 징수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DCS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이를 알려 드립니다.

연방 소득세 환불금 상쇄, 행정적 지불금 상쇄 및 여권 발급 거절

DCS는 해당 사례가 다음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세청(IRS)에 비양육권자 부/모의 체납 양육비 사례를 통보합니다.

1. DCS에서 비양육권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를 알 경우
2. 하나의 양육비 명령서 하에 발생한 체납금일 경우
3. 비양육권자 부/모의 양육비 총 체납금이 \$500.00 이상일 경우. DCS에서 총 체납 양육비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DCS에 귀하의 사례가 수락된 날짜부터 연체된 금액까지만 계산해 양육비 체납금으로 제정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IRS는 그 소득세 환불금을 해당 양육비 체납금에 반영하기 위해 DCS에 송금합니다.

비양육권자 부/모가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 DCS는 양육권자 부/모에게 돈을 바로 송금하기 보다는 환급액을 6개월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상대가 자기 몫의 환급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DCS에서 해당 세금 환급액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권자 부/모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의무가 있는 금액은 체납된 아동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권자 부/모의 아동양육비 체납금이 최소한 \$2,500.00이 되면 연방정부는 비양육권자 부/모의 여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분배

아동양육비 지급액을 전달하는 데 있어 연방 및 주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DCS는 양육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양육비 수령 날짜를 사용합니다. 양육비 관련 양측 부/모는 양육비 지급 범위 기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DCS에서 받은 그달 금액(IRS로부터 받은 세금환급액 제외)은 그달 현행 아동양육비부터 먼저 지불합니다. IRS에서 보내오는 세금환급액은 오직 체납된 아동양육비 지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보호자로서 부/모가 TANF, 부족 TANF 또는 AFDC 자금을 한 번도 수혜한 적이 없으면 수수료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DCS는 매년 10월1일에서 9월30일 사이에 발생한 사례에 대해 해당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550를 전달한 후 \$35의 수수료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DCS에서 현행 아동양육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추가 금액은 양육비 체납금에 적용시킵니다.
4. 비양육권자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가족이 둘 이상일 경우 DCS는 모든 현행 양육비부터 먼저 지급하고 난 후 체납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 명령서 관련 양측 부/모는 DCS에서 양육비를 분배해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규정에 제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 부/모는 양육비지급(PSO) 사례에 대해 양육비 배정금을 특별히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PSO는 그러한 사례들을 양육비 전달 기록을 제공하는 DCS에 의뢰하지만 양육비 명령서 실행을 강행하지는 않습니다.

DCS는 현행 양육비 지급금을 귀하에게 지불할 것입니다. 은행에 바로 입금시키도록 서명하셨다면 DCS는 전자자금이체(EFT)를 통해 귀하의 은행에 바로 입금합니다.

주: DCS는 귀하가 양육비를 은행에 바로 입금시키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DCS 현금인출카드(debit card)라고 하는 비자직불카드(Stored-Value Visa Debit Card)를 자동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DCS debit card가 있으면 귀하의 은행계좌가 아닌 이 카드에 아동양육비가 자동입금됩니다. 아동양육비는 대부분의 경우 DCS에서 해당 사례에 아동양육비를 적용한 후 업무일로 3일 이내에 DCS debit card나 은행계좌에 입금합니다. DCS debit card 카드는 VISA 카드를 받거나 현금인출기(ATM)가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금결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관한 정보는 800-468-7422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www.dshs.wa.gov/dcs를 방문하십시오.

체납된 양육비는 귀하에게 지급될 수도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귀하나 자녀들이 정부 보조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경우 DCS에서 체납금을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2. 정부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고 체납금 수령 권한을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 DCS에서 귀하에게 그 체납금을 지급합니다.

3. 이 전에 정부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DCS는 정부보조금 중단 이후에 받은 양육비 체납금을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a. 첫 째, 주정부에 지정된 적이 없었던 모든 양육비 체납금
 - b. 둘 째, 아래 d항에서 설명한 영구히 지정된 양육비 체납금의 일부가 아니며, 1997년 10월1일에서 2008년10월1일 사이에 주정부에 일시적으로 지정된 모든 양육비 체납금
 - c. 세 째, 자녀의 의료지원(금)에 대한 모든 양육비 체납금
 - d. 네 째, 1997년 10월1일 전에 지정된 공공보조금으로 인해 주정부에서 영구히 지정한 양육비 체납금 또는 그 달에 지급된 공공보조금으로 인해 그 날짜 이후에 지정된 모든 양육비 체납금
 - e. 다섯번 째, 주정부에 지정된 모든 자녀의 체납 의료지원(금)
 - f. IRS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귀하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아동양육비 체납금을 분배하기 전에 주정부에 지정된 아동양육비 체납금과 의료지원 체납금
4. 비양육권자 부/모가 한 가족 이상에게 양육비를 체납했을 경우 DCS는 해당 가족 간에 징수된 돈을 비례하여 분할합니다.

지불금 회수

RCW 26.23.035(3) 및 74.20A.270에 따라 DCS는 잘못 지급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양육비 금액을 회수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DCS가 지급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 a. DCS가 금액을 잘못 지급한 경우.
 - b. DCS가 비양육권자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송금한 경우. 즉, 양육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2. 귀하의 사례가 PSO(Payment Service Only)인 경우, DCS는 먼저 귀하가 지불할 예정인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원천 징수함으로써 잘못 지급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합니다. RCW 26.23.035(3)은 통보 없이 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a. DCS는 지불 예정인 가장 최근 양육비의 10%를 자동으로 원천 징수함.
 - b. DCS는 지불 예정인 체납 양육비의 100%를 자동으로 원천 징수함.
3. DCS는 잘못 지급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양육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RCW 74.20A.270가 허용하는 다른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DCS를 통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DCS가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 DCS는 통보 조치를 취합니다. 이의가 접수되지 않으면 DCS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a. 귀하를 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나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양육비를 위한 수입 원천 징수 명령을 발송. 본 명령/통보는 귀하의 고용주나 다른 사람 또는 조직으로 하여금 잘못 지급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양육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의 수입, 수익 및 자산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요구함.
 - b. 귀하의 부동산 및 개인 자산에 대한 선취특권 제출.
 - c. 챕터 26.09, 26.18, 26.23 및 74.20 RCW에 따라 사용 가능한 DCS 징수 해결책 사용.

부족 정보

DCS는 DCS나 해당 부족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부족, 부족 소유의 사업체 또는 인디언 지정 보유지 내에 위치한 인디언 소유 사업체에 다니는 직원에게 이 서류에 기재된 양육비 집행 또는 징수 절차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비양육권자 부/모가 인디언 부족, 부족 소유의 사업체 또는 인디언 지정 보유지 내에 위치한 인디언 소유 사업체에 다니는 직원일 경우 DCS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족에게 비양육권자 부/모의 양육비 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DCS는 워싱턴주와 해당 부족 사이에 요청 절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수행합니다.
2. 해당 부족 법원에 비양육권자 부/모의 양육비 명령서를 설정 또는 집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DCS에서 부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DCS는 워싱턴 주와 해당 인디언 부족간의 합의 요약 절차나 현행 부족법원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S는 비양육권자 부/모의 사례에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될 경우 어느 한 부족 집행부에 해당 사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명령서에 관계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한 인디언 부족의 일원일 경우
2. 비양육권자 부/모가 인디언 부족, 부족 소유의 기업체 또는 인디언 지정 보유지 또는 토지 신탁 내에 위치한 인디언 소유 사업체에 다니는 직원일 경우
3. 아동양육비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협동 아동양육비 절차 또는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
4. 아동양육비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부족 TANF 또는 부족 아동양육비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경우
5. 귀하의 사례가 다른 부족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아동양육비에 적용되는 법과 정책

DC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주관 법률(RCW: Revised Code of Washington) 및 워싱턴 주 행정법(WAC)은 다음과 같습니다.

RCW 제 26.09조 WAC 제 388-14A조

RCW 제 26.18조

RCW 제 26.21A조

RCW 제 26.23조

RCW 제 74.20조

RCW 제 74.20A조

아동양육비 부채금에 출소 기한법(The statute of limitations)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경우 비양육권자 부/모는 출소 기한법을 사용하여 아동양육비 부채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더 이상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본 사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800-442-5437의 "KIDS" 자동 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십시오. 가능한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KIDS" 시스템이 귀하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면 DCS에 전화하여 귀하의 사례를 담당자에게 말하십시오. 잦은 전화 사용은 귀하의 사례에 대한 양육비 징수에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전화횟수를 줄이면 DCS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DCS에 반드시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아래에 제공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십시오. 장거리 전화일 경우에만 무료전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장애 또는 청각 장애자는 TTY/TD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attle:	(206) 341-7000 또는 (800) 526-8658	Vancouver:	(360) 696-6100 또는 (800) 345-9984
Tacoma:	(253) 597-3700 또는 (800) 345-9976	Wenatchee:	(509) 886-6800 또는 (800) 535-1113
Everett:	(425) 438-4800 또는 (800) 729-7580	Yakima:	(509) 249-6000 또는 (800) 441-0859
Spokane:	(509) 363-5000 또는 (800) 345-9982	Olympia:	(360) 664-6900 또는 (800) 345-9964
Kennewick:	(509) 374-2000 또는 (800) 345-9981		

전자지급에 관한 정보는 800-468-7422나 DCS의 웹사이트, www.dshs.wa.gov/dcs를 방문하십시오. <https://secureaccess.wa.gov>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면 해당 사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서비스 또는 저희의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 아무도 인종, 피부색, 국적, 신념, 종교, 성별, 나이 또는 장애 여부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은 요청하실 경우 다른 형식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